

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7. .

발 의 자 : 조승남 의원외 2인

□ 제 안 이 유

○ 지방자치법 제35조,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
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관리란
용어는 현재 속초,시에서 의회에 승인요청하는 "취득, 처분, 교환"
뿐만 아니라, 대부및 사용허가등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임.

○ 따라서,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대부및 사용허가로 포함
시킴으로써 위 관계법령에 위배되었던 사항을 바로잡고 속초시 공유
재산의 보존및 관리에 적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바람.

□ 주요골자

○ 동조례 제39조 (공유재산관리계획의 "취득, 처분, 교환등"
을 "취득, 처분, 교환, 대부및 사용허가등"으로 개정

속초시조례 제 호

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중 "취득·처분·교환등"을 "취득·처분·교환·대부 및
사용허가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(제명 :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)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 (공유재산 관리계획) 공유재산을 <u>취득·처분· 교환</u>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 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39조 (공유재산 관리계획) 취득·처분· 교환·대부및 사용허가